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강제추행죄에 대한 벌금형 신설〉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43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기호 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9.
3. 회 부 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Ⅲ.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 간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행위가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1)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u>유기징역</u> 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 ----- ----- ----- <u>유기징역</u> <u>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 -----.

- 현행법 제92조의3의 강제추행죄(이하 “군인등강제추행죄”라 함)는 「형법」 제298조²⁾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군인 또는 군무원 등

- 1)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에 준하는 사람 간에 강제추행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됨.³⁾

○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여군이 증가하고 위계질서를 이용한 군내 성범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 11. 2.에 신설된 죄로, 「형법」 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인임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범죄로서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⁴⁾

○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 조직 구성원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로부터 구성원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 확립을 통한 전투력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함.⁵⁾

□ 개정안은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죄질과 행위자 책임에 비례한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행법 하에서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이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선택형 없이 유기징역만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죄질이나 책임이 경하여 집행유예나 정상참작 감경 등을 통해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죄질과 책임과 무관하게 군인 등의 신분은 일률적으로 박탈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3) 육·해·공군 군사법원, “군형법 주해”, 2015, p.410.

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5)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9헌바52 결정 등

○ 또한, 대법원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다고 판시⁷⁾하는 등 최근 강제추행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신설할지 여부는 「군형법」의 제정 목적,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국민 일반의 법 감정 및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군 조직 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가 다수이며 이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는 점, 군 조직 내에서 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점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법관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⁹⁾ 등을 고려할 수 있음.

6)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이나 군무원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군인사법」 제10조제2항 및 제40조제4호, 「군무원인사법」 제27조 및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8) 고등군사법원 2014. 9. 18. 선고 2014초기6 판결

문 의 처
02)6788-5073

9)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9헌바52 결정 등